HRDe Solution



법정교육

퇴직연금 교육

퇴직연금 교육

퇴직연금의 도입

▨ 퇴직연금의 도입 배경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18년에는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으며, 오는 2026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퍼센트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노령인구가 증가하다 보니 65세 이상의 노인 부양 비용에 대한 부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2021년 12월 발표된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자료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노인 인구 수가 1960년에는 5명이었지만, 2020년에는 22명으로 증가하였고, 2070년에는 101명으로 늘어나게 되어, 생산가능 연령층보다, 부양해야 하는 노년층 숫자가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노후 준비가 중요한 이유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은퇴 후 노후 기간은 길어지고 노후 생활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준비는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노령인구의 기대수명은 1990년에는 71.7세였지만, 2021년에는 8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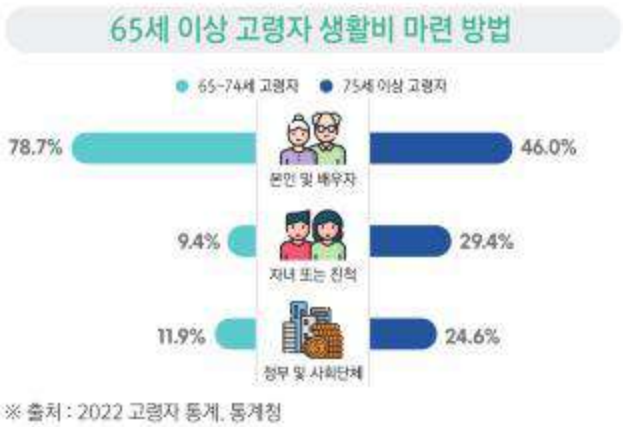
세로 12년이 증가함으로써 노후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배움의 시기 20년, 근로의 시기 40년, 은퇴 생활이 2년으로 노후를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였지만, 현재는 배움의 시기 25년, 근로의 시기 35년, 은퇴 생활 20년으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시기가 줄어들었으며, 미래에는 배움의 시기 30년, 근로의 시기 25년, 은퇴 생활 45년으로 노후 생활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더 줄어들고 은퇴 후의 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2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은 65세에서 74세 고령자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가 마련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8.7%로 가장 높았고, 자녀 또는 친척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한다는 비율은 9.4%, 정부 및 사회단체의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11.9%로 조사되었으며, 7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는 46%가 본인 및 배우자가 생활비를 마련한다고 응답하였고, 29.4%는 자녀 또는 친척의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하였으며, 정부 및 사회단체의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24.6%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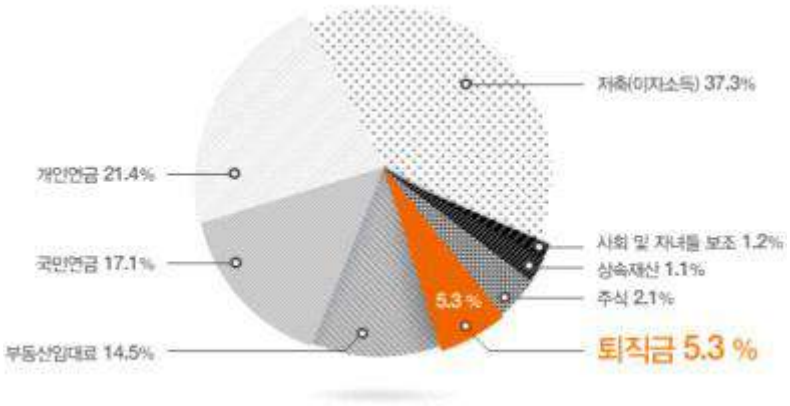


이처럼 65세 이상 고령자의 생활비 부담 비율 중 본인 부담 비율이 증가하면서 노후 생활 재원을 직접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2년 현재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6년, 평균 퇴직 연령은 49.3세로 노후 대비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노후 대비 수단 조사 결과,

- 저축과 이자소득: 37.3%
- 개인연금: 21.4%
- 국민연금: 17.1%
- 부동산 임대료: 14.5%
- 퇴직금: 5.3%
- 주식: 2.1%
- 사회 및 자녀들의 보조: 1.2%
- 상속재산: 1.1%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통계청과 국민연금연구원의 2022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 60세 이상 중
 노후 준비 안 된 비율: 52.6%
- 65세에서 74세 고령자의
 생활비 본인 부담률: 78.7%
- 부부 한 쌍의
 적정 노후 생활비: 277만 원
- OECD국가 중 노인빈곤율: 37.7%(1위)
- OECD국가 중 노인자살률: 1위



지금 우리나라 노후 생활의 현실입니다.
길어지는 노후 기간을 '품위 있고 행복하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미래 생활을 예측하고 현재의 재무 상황을 점검하여 노후 기간에도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세워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노후 준비 기본전략

퇴직연금을 포함한 연금 상품으로 현금 흐름을 유지해야 하고, 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해야 하며, 절세와 복리를 활용한 현명한 노후 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퇴직연금을 포함한 연금 상품을 통해 3층 보장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3층 보장 체계란 국민연금으로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받고, 퇴직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하며, 개인 연금으로 여유있는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 1층_국민연금: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가 만든 국가보장 사회보험제도
- 2층_퇴직연금: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노사협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기업보장 제도
- 3층_개인연금: 여유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 개인이 자발적으로 준비하는 자기보장 연금제도



여기서 퇴직연금은 노후의 안정적인 수입원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며 현재 생활에 큰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3층 보장 체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 자산·부채 관리의 일반적 원칙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자산과 부채 관리가 필요한데, 자산과 부채 관리의 일반적 원칙으로

1. 0세에서 30세까지의 시기 _ 자산관리의 시작기
 중·장기적인 재무계획 아래 종잣돈 마련에 주력해야 하고, 계획을 세워 소비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2. 30세에서 40세까지의 시기 _ 자산형성의 핵심기
 소득이 증가하지만 동시에 결혼, 주택 마련 등 지출도 늘어나는 시기이므로, 목적 자금 마련 플랜을 통해 재무 이벤트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3. 40세 이후의 시기 _ 자산소비 및 안정적 증식기
 자녀 대학 등록금, 결혼 등 큰 목돈 지출에 대비한 자금관리가 필요한 시기로,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노후 소득점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퇴직급여제도의 개요

▨ 퇴직급여제도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말하는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줄여서 기금제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퇴직급여제도

퇴직금제도	사용자(회사)가 퇴직일 직전 3개월 급여의 평균임금에 재직연수를 곱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퇴직연금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 재원을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게 적립하고 사용자 또는 근로자, 공단의 지시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되며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및 기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기 때문에 기업이 도산 또는 파산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퇴직금은 안전하게 보장됩니다.



▨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란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며, 근로자 퇴직 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퇴직 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기존 퇴직금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퇴직금을 사외적립하고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강화한 선진 퇴직급여제도인데, 운용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사전에 근로자가 받을 급여 수준 결정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사용자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고, 투자 성과에 따라 급여 변동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사용자 부담금 외에 IRP계좌 설정해 추가부담금 납입 가능

1.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기존의 퇴직금제도는 40여 년 전에 도입된 제도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지 못

해 노후 소득 재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퇴직금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퇴직금제도 VS 퇴직연금제도

비교항목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적립·운용 및 지급 형태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내에 보관해 두었다가 퇴직 시 일시금 형태로 수령	퇴직금을 사외(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운용하므로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근로자는 적립된 퇴직금을 안정적으로(연금 혹은 일시금 형태) 수령
제도 운영 주체	기업(사용자) 중심 의사결정	기업(DB) 또는 근로자(DC/IRP)가 운영 주체
부담금 납입 주체	해당없음	기업(DC/IRP의 경우 근로자 추가적립 가능)
운용 위험 부담	해당없음	DB : 기업 DC/IRP : 근로자
퇴직급여 수준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 평균임금 x 근속연수	- DB :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 평균임금 x 근속연수 - DC/IRP : 부담금 ± 수익률
근로자 세제 혜택	퇴직금 수령 시 과세	- 연금 수령 시까지 과세 이연 - 일시금
중간정산 (중도인출)	법정사유 충족 시 가능 • 중간정산 사유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무주택자의 주거목적의 전세자금 혹은 보증금(한 사업장에 근무 기간 중 1회)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파산선고 받은 경우	DB : 불가 법정사유 충족시 가능 • 중간정산 사유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무주택자의 주거목적의 전세자금 혹은 보증금(한 사업장에 근무 기간 중 1회)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받은 경우 - 기타 천재지변 등 - 정년을 연장·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 감액 - 노사합의로 근로 시간을 하루 1시간 혹은 일주일에 5시간 이상 변경(3개월 이상 지속)	- 파산선고 받은 경우 -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받은 경우 - 기타 천재지변 등

2. 퇴직연금의 종류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확정된 제도로, 퇴직금과 동일한 개념이며 근속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이 퇴직연금으로 적립되고,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이 결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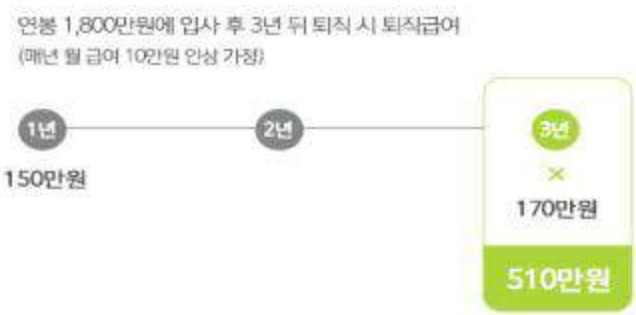
_ 자산

사용자가 운용하고, 기업의 부담금은 적립금의 운용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이며,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_ 퇴직급여 계산

예를 들어 연봉 1,800만 원에 입사 후 3년 뒤 퇴직 시 퇴직급여는, 매년 월 급여가 10만 원씩 인상된다고 가정했을 때 3년 뒤에는 월 급여가 170만 원이 되므로, 170만 원에 근무 기간 3년을 곱하면 510만 원이 퇴직급여가 됩니다.



_ 퇴직급여 지급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퇴직급여 전액을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 계좌에 의무적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_ 특징

퇴직금 수준이 미리 확정되어 있으므로 안정적으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고, 운용의 책임은 회사에 있으므로 근로자는 퇴직금의 투자나 관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_ 사용자의 적립금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95%에 미달하는 경우, 재정검증 결과를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재정 안정화 계획서를 작성하여 퇴직적립금사업자와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해야 하며, 부담금 납입 등을 통해 적립금 부족을 해소해야 합니다.



(법정) 최소적립비율

적용기간	최소적립비율
2012. 7. 26. ~ 2013. 12. 31.	60%
2014. 1. 1. ~ 2015. 12. 31.	70%
2016. 1. 1. ~ 2017. 12. 31.	80%
2018. 1. 1. ~ 2021. 12. 31.	90%
2022년 이후	100%

적립금 부족 해소 방안

해소 방안	내용
부담금 납입 등	부담금 납입 등을 통해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의 삼분의 일 이상을 해소해야 하며, 해소 시기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소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고, 3년간 보존 • 포함할 내용 _ 부족 금액에 대한 자금 조달 방안, 납입 계획 등
재정안정화계획서 통보	작성한 재정안정화계획서를 근로자대표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통보 • 통보 시기 : 재정검증 결과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기업이 부담해야 할 부담금의 비율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 제도로, 기업은 근로자 연간 입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적립해야 하며, 근로자는 적립금을 운용할 상품을 선택 후 직접 운용하고, 운용에 따른 책임과 결과는 근로자에게 귀속되며, 퇴직 시 적립금 및 적립금 운용에 따른 손익금액을 수령하는 제도이고, 퇴직급여는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_ 퇴직급여 계산

예를 들어 연봉 1,800만 원에 입사 후 매년 월 급여가 10만 원씩 인상된다고 가정할 경우, 3년 뒤 퇴직 시 수령하게 되는 퇴직급여는 1년 차 월 급여 150만 원에 운용손익을 더한 금액과 2년 차 월 급여 160만 원에 운용손익을 더한 금액, 그리고 3년 차 월 급여 170만 원에 운용손익을 모두 더한 금액을 퇴직급여로 수령하게 됩니다.



_ 퇴직급여 지급

가입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퇴직급여 전액을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계좌에 의무적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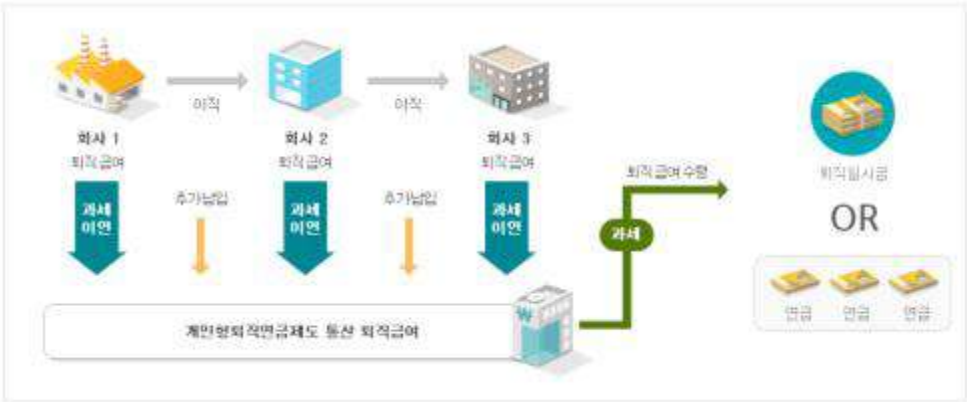


_ 특징

근로자의 투자성향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운용이 가능하고, 운용의 책임은 근로자에 있으므로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 또는 손실이 반영되어 퇴직급여가 변동될 수 있으며, 회사가 적립하는 부담금 외에 가입자의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하고, 근로자 추가부담금에 대해 일부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

근로자가 이직 또는 조기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은퇴할 때까지 보관· 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퇴직 근로자는 퇴직일시금을 개인형 IRP로 이전하여 퇴직소득세의 과세이연으로 실질수령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어 근로자에게 더욱 유리합니다.



_ 퇴직급여 지급

· 퇴직연금 미가입자: 퇴직금 수령을 위해 개설한 개인형 IRP계좌에 퇴직금이 입금되면, 퇴직금을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투자·운영한 후 만 55세 은퇴 후에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

· 퇴직연금 가입자: 개인형 IRP에 적립된 퇴직금에 여유자금을 추가 납입해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투자·운영한 후 만 55세 이후 은퇴 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대상자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금 수령 시	- 퇴직 예정 근로자
개인 부담금 납입 시	- IRP계좌로 퇴직금 수령 예정자 - 공무원, 사립학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가입자 - 자영업자 -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기업형IRP, 종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한 근로자 - 퇴직연금제도 미설정 근로자 중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자

_ 납입 한도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퇴직금은 IRP 연간 납입 한도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전액 입금 가능합니다.

단, 납입 한도는 전 금융기관의 저축연금계좌 및 퇴직연금계좌 등 연금계좌와 합산하여 적용하므로, 계좌당 납입 한도를 너무 높게 설정할 경우 다른 연금계좌 개설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수급요건에 따른 급여 지급 형태

구분	DB·DC·기업형IRP	개인형 IRP
연금	개인형 IRP로 이전 후 수령	① 만55세 이상 ② 가입기간 5년 이상 ③ 연금수급기간 10년 이상 ※ 연간 연금수령 한도 존재
일시금	연금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_ 특징

해지 시까지 소득세 납부가 연기되는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일시금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 및 이자 부분에 대한 기타소득세가 적용되며,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확정급여형이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기업의 근로자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여 추가 납입도 가능한데, IRP계좌에 퇴직금과 별도로 연간 1,800만 원까지 추가 불입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는 납입액 900만 원의 16.5%가 공제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중도인출 가능 사유

- 무주택자 주택구입
-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담보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담보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천재지변

• 특례조항 _ 기업형 퇴직연금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 또는 요구에 따라 개인형연금제도에 가입 시 퇴직연금 규약 신고 없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기업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IRP계좌에 납입해야 하고, 근로자는 회사가 퇴직금으로 납입하는 부담금 외에 추가 자금도 납입할 수 있습니다.

_ 자금 운용상품의 선택

근로자가 하므로 자산운용의 책임과 결과도 근로자에게 귀속되며, 10인 이상이 되면 1년 이내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여야 하며, 퇴직 시 개인형 IRP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효과

퇴직연금제도는 기존의 퇴직금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므로, 기존 퇴직금제도에는 어떤 단점들이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_ 기존 퇴직금제도의 단점

① 퇴직금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의 재원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기업이 갑자기 도산하는 경우 퇴직금이 체불되는 사례가 빈번하였습니다.

② 이직 및 중간정산으로 인한 퇴직금 조기 소진

연봉제와 잦은 이직, 퇴직금 중간정산 등으로 퇴직금이 조기 소진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③ 예산 예측의 어려움

연봉제와 퇴직금제도의 동시 적용으로 퇴직금 수령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예산 예측이 어려웠습니다.

④ 근로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 부족

퇴직금제도가 임금피크제 등 새로운 제도 도입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여 경영 효율 개선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_ 근로자 측면의 도입 효과

① 더 많은 퇴직금의 안전한 보장

임금상승률이 낮은 중소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확정기여형 제도를 통해 더 많은 퇴직소득을 얻을 수 있고, 퇴직금이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되므로 기업의 도산이나 폐업에도 안전하게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② 세금 절약 및 절약한 세금으로 재투자 가능

퇴직금 수령 시 납부해야 했던 세금이 퇴직급여 수령 시로 연기되는 과세이연 효과와 가입기간 동안 과세되지 않았던 퇴직소득세, 이자소득세 등을 재투자함으로써 추가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③ 풍요로운 은퇴 생활

근로자가 추가로 퇴직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추가 적립된 자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이렇게 적립된 퇴직급여는 연금 형식으로 수급이 가능하며, 은퇴 후 근로자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_ 기업 측면의 도입 효과

① 확실한 비용 절감 효과

퇴직금제도는 연봉 인상에 따라 부담금 액수도 증가하지만, 퇴직연금제도는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부담금 액수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시킵니다. 한편, 적립금 운용으로 퇴직급여액이 증가하게 되므로, 근로자 부담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② 현금 흐름과 기업경영의 안정화
기업은 정기적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게 되는데, 이는 퇴직급여 부담을 평준화하여 비용 예측을 용이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부채 부담을 완화시켜 재무개선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③ 임금채권부담금 감면 및 근로자 이탈 감소
모든 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임금채권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퇴직연금 가입사업장은 임금채권부담금의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급여수급액이 증가하므로 근로자의 장기근속률을 향상시키고 기업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 및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회사는 가입자의 사용자부담금계좌로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게 되는데, 공동으로 조성한 규모화된 기금을 바탕으로 노·사·정 대표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의사결정으로 전문적·체계적으로 기금을 운용하여 안정적 수익 추구하는 기금제도입니다.

1. 사업주와 가입자가 얻을 수 있는 효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_ 도입효과(사업주)

도입효과	내용
사용자부담금 지원	월평균 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의 10%를 지원합니다.
수수료 0원	2023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신규 가입 시 5년간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쉽고 간편한 가입절차	퇴직연금 가입시 복잡한 절차(규약서, 운용·자산관리계약서 등)가 **표준계약서** 하나로 해결됩니다.
법인세(사업소득세) 절감 효과	사용자부담금 납입액이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손금 및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분할적립하여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 장기근속 유도	퇴직금을 분할하여 사외적립하므로 장기근속에도 안정적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_ 도입효과(가입자)

도입효과	내용
공적 기금형 퇴직급여제도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퇴직연금기금을 공적으로 관리·운영합니다.
안전한 노후보장	퇴직급여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사외적립되어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호됩니다.
안정적인 수익률 추구	공동으로 조성한 규모화된 기금을 바탕으로 전문적·체계적으로 퇴직연금기금이 운용되므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운용결과에 따른 손익은 가입자에게 귀속됩니다.
믿을 수 있는 투자의사 결정	근로자 선택을 대신하여 노사정 대표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공정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진행합니다.
자산전문운용전담기관 운용	자산운용전담기관인 미래에셋증권, 삼성자산운용에서 퇴직연금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합니다.

퇴직급여제도의 운영

▨ 임금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구분	의의	적용
임금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떤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세부적인 임금 포함 항목은 회사를 통해 확인	
평균임금	퇴직이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제도 퇴직급여 산출
(연간) 임금총액	1년동안 지급된 모든 임금의 합계액으로 퇴직급여 산정 대상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의 총합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제도 퇴직급여 산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사용자 부담금 산출

▨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과 납입 시기 및 납입현황

부담금의 종류

부담금 종류		내용
퇴직연금	사용자 부담금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적립
	가입자 추가 부담금	근로자가 개인 자금을 추가로 적립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사용자부담금 계정 부담금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12이상을 적립
	가입자부담금 계정 부담금	근로자가 개인 자금을 추가로 적립

1. 퇴직급여제도의 사용자 부담금 수준

- 부담금: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납입 횟수: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
- 납입 시기: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 1
 정기 납입일 지정해 자동이체 신청하되 1일, 10일, 25일 중 택 1
- 부담금 납입예정일: 사용자와 근로자가 규약에서 정한 날이며, 사용자가 위 납입 시기 중 선택하여 선납 가능

자신의 퇴직연금·기금의 납부 현황이 궁금한 경우, 부담금 납입 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데, 부담금 납입 현황은 우편 또는 전자문서나 카카오톡 문서 등으로 고지된 퇴직연금·기금 운용현황 안내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공단 퇴직연금·기금 홈페이지(pension.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의 납부금의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 지연이자가 부과되는데,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할 시기에 미납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미납한 날부터 납입한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사용자가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하며, 지연이자율은 납입 기일 다음 날부터 퇴직 후 14일까지는 연 10%, 퇴직 후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납입일까지는 연 20%가 부과됩니다.



부담금 납입 지연이자 제외 사유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도산 등 사실인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퇴직연금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폐지 시 조치 사항

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경우 퇴직연금·기금제도에 적립된 근로자의 퇴직금은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이전되고, 폐지된 이후 다른 퇴직연금이나 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으면, 퇴직금제도를 적용한 것으로 보며,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이전된 퇴직금에 해당하는 근무 기간만큼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것으로 봅니다.



- 근로자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퇴직금 지급
- 퇴직연금제도 폐지일부터 1개월 이내 폐지신고서 제출
- 가입자에게 급여 명세 및 지급 절차 등 통지
- 폐지일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 납입

▨ 퇴직연금사업자의 변경

1. 퇴직연금 계약이전 절차

1) 근로자의 동의

먼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계약이전에 관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규약 변경

고용노동부에 퇴직연금사업장 변경에 관한 규약 변경을 신고하고 고용노동부에서 규약 변경에 관한 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3) 계약이전 및 이전 신청

규약 변경에 관한 수리가 이루어지면 기존의 퇴직연금사업자에서 계약을 이전해야 하고, 새로운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 관리 기관과 계약 체결 및 계약이전을 신청해야 합니다.

4) 퇴직연금제도 운영

새로운 기관에서 계약 정보를 이전하고, 신규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해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게 됩니다.

기업형IRP의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규약 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이전 절차

- 타 연금사업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이전

기존 연금사업제도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기존 타 연금사업의 규약을 폐지한 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_ 이전 절차

① 근로자의 동의

근로자 대표의 동의 또는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② 규약 폐지 신고

고용노동부에 퇴직급여제도 변경에 따른 규약 폐지를 신고하고 해당 신청에 대해 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일 일부 가입자만 이전한다면, 규약 폐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③ 제도 이전 신청

규약 폐지 신고가 수리되면, 기존의 퇴직연금사업자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계약을 체결하고 제도 이전을 신청해야 합니다.

④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

근로복지공단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퇴직급여를 운영하게 됩니다.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서 타 연급사업으로 이전

_ 이전 절차

① 근로자의 동의

제도 이전에 관한 근로자 대표의 동의 또는 의견 청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② 규약 수립·신고

고용노동부에 퇴직연금 규약 수립 및 신고를 해야 합니다.

③ 제도 이전 신청

타 퇴직연금으로 계약 체결을 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제도 이전을 신청해야 합니다.

④ 퇴직연금제도 운영

계약 정보 이전 후, 신규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해 퇴직연금제도가 운영됩니다.



▨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수급권 보호**

퇴직연금·기금제도를 통해 근로자가 은퇴 후에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급권에 대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수급권의 보호를 위해 퇴직연금·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단, 가입자가 법정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정 한도 내에서 적립금의 100%까지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담보제공은 가입자별 적립 금액의 50%까지 가능합니다.

퇴직급여제도의 중도인출 요건과 담보대출 사유

※ 공단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현재 중도인출만 가능

구분	중도인출, 담보대출 사유
	• 무주택자의 본인명의 주택 구입
	• 무주택자의 주거목적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동일 사업장 재직 중 1회만 가능)
	• 본인 및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부양가족 :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 (의료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 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
	• 최근 5년 이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에 따른 파산 또는 개인회생 (담보대출 : 담보를 제공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 (중도인출 : 결정일/선고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해당)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장례비 발생 사유는 담보대출만 가능합니다.
※ 퇴직연금 · 기금제도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 상환을 목적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하나 해당 관련 고시 미확정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인 및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으로 중도인출 신청 시 부담한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 퇴직연금(DC)·기금 중도인출 프로세스

근로자가 중도인출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사용자 즉 회사는 서류를 확인하고 중도인출을 신청하며, 퇴직연금사업자는 서류를 심사한 후 운용 상품을 매도해서 중도인출금을 지급하는 프로세스로 운영됩니다.

1. 중도인출 시 필요한 서류

- 근로복지공단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_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서 및 첨부서류 준비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_ 퇴직급여 중도인출 신청서 및 첨부서류 준비

중도인출 사유별 필요 제출 서류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 및 푸른씨앗 홈페이지 고객센터 서식자료실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중도인출 시 적용세율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회사 부담금과 운용수익 및 개인형 퇴직연금의 과세이연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로 과세되며, 가입자 추가부담금의 세액공제분과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세 16.5% 과세가 적용됩니다.

단, 중도인출 사유 중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소득세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 퇴직급여 지급 _ IRP로의 적립금 이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인 IRP는 근로자가 이직 또는 퇴직 시 수령하는 퇴직급여를 모아 은퇴 시점까지 보관·운용할 수 있는 퇴직금 전용 계좌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에 따라 퇴직연금가입자의 퇴직급여는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 즉, IRP로 이전되며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이전된 퇴직급여는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퇴직급여의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급여종류	제도유형	수급요건
연금	개인형퇴직연금	• 만 55세 이상 • 연금지급기간은 5년 이상
일시금	DB, DC, 퇴직연금 IRP (기업형/개인형)	• 원칙 : IRP계좌로 이전 • 예외 : 만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일시금 수령가능 ※ IRP계좌로 이전된 적립금은 언제든지 해지하여 일시금 수령 가능

1. 퇴직급여의 IRP계좌 입금

2022년 4월 14일부터 의무화되었는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IRP계좌를 개설하도록 안내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IRP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다만, 만 55세 이후에 퇴직하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이면 퇴직금을 IRP계좌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근로자는 퇴직급여가 IRP계좌에 입금된 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고, 퇴직급여를 투자상품에 가입하여 운용한 뒤 55세 이후에 퇴직급여 및 운용실적에 따른 손익금액을 더하여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도 있는데,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 수령보다 세금을 3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의 개인형퇴직연금(IRP) 이전 효과

구분	내용
과세이연	• 세금 납부 시점을 미뤄 투자기회 창출 - 퇴직급여를 IRP계좌로 수령 시 세금 차감없이 전액 입금, 자금인출(일시금, 연금)까지 세금 납부 연기 - 세금이 원금에서 차감되지 않아 이연세액이 재투자되는 효과
절세효과	•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 시 (이연)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

자산관리 운용효과	• IRP내에서 다양한 상품 선택 및 투자비율 변경을 통한 포트폴리오 구성가능 • 가입자부담금 추가 적립 가능, 추가 적립금은 한도내 세액공제 대상

2. 개인형퇴직연금·기금제도의 연간 납입액 한도와 세액공제 금액

근로자 본인 희망 시 연금저축, DC, IRP, 기금 합산 연간 등을 합산하여 연간 1,800만 원까지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추가 납입할 수 있으며, 총 900만 원 한도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총 900만 원에 대한 세부 세액 공제 내역은 퇴직연금이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과 연금저축을 합산하여 연 6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퇴직연금이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자비로 추가 납입한 금액 중 연 300만 원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연금 계좌의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액이 5천 5백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이고, 5천 5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2%입니다.



3.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운용 형태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운용 형태	
원리금보장형	- 금융회사에서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는 상품 - 예금자보호 가능
실적배당형	- 국내외 주식 및 채권에 투자하여 운용을 하고, 그 운용수익을 투자자에 배당 - 운용성과에 따라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 - 예금자 보호 대상 아님

4. 퇴직연금 및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과세 체계

연금 계좌에서 적립금을 수령하는 경우 퇴직급여, 가입자추가부담금 및 운용수익 등의 소득 원천과 일시금과 연금 수령 등 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퇴직연금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적용되는 과세는 다음과 같으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과세됩니다.

퇴직연금 및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과세 체계		
소득원천	일시금 수령	연금 수령
퇴직급여 (사용자 부담금)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70%)
가입자추가부담금 운용수익	기타소득세(16.5%)	연금소득세(3.3% ~ 5.5%)

※ 연금 수령 _ 55세 이후 5년 이상 기간 동안 받는 금액 중
연금수령한도 이내 금액 수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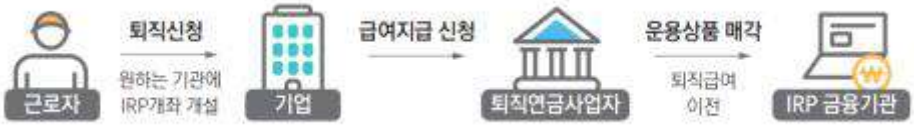
※ 연간 연금수령한도: $\frac{\text{과세기간개시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액}}{11 - \text{연금수령연차}} \times 120\%$

2013년 3월 1일 이전 연금 계좌 가입자는 연금수령 연차에 5를 더하여 계산합니다. 사망, 해외이주, 파산, 개인회생,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는 연금을 수령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가입자추가부담금 중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아니한 금액은 과세에서 제외되며, 가입자추가부담금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합산 과세 대상이 됩니다.

▨ 퇴직급여의 지급 절차

퇴직급여의 조속한 지급 처리를 위해서 가입자와 사용자는 퇴직 발생 즉시 근로복지공단에 퇴직 신고를 해야 하는데, 4대보험 고용종료 신고와 별도로 신고를 진행해야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 중인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급여의 지급은 반드시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계좌에 이전해야 합니다.

1. 퇴직연금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 프로세스
 근로자가 기업에 퇴직을 신청하면, 기업은 퇴직근로자에게 퇴직근로자가 원하는 금융기관에 IRP계좌 개설을 안내해야 하고, 퇴직근로자가 기업의 안내에 따라 IRP계좌 개설한 후에는 기업은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급여 지급 신청을 하며, 퇴직연금 사업자는 퇴직근로자의 운용 상품을 매각한 후 퇴직적립금과 운용상품의 운용에 따른 손익금을 더하여 퇴직근로자가 개설한 금융기관의 IRP계좌에 퇴직급여를 이전해야 합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거나, 퇴직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은 가입자의 일반계좌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IRP 이전 시 퇴직급여 전액에 대하여 과세이연되므로 퇴직소득세 상당액만큼 투자 원금이 증액되는 효과가 있어 노후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게 되며, 근속연수 1년 이상 가입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1년 미만인 자의 경우 퇴직연금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합니다.

또한 회사가 지급하는 퇴직금이 있는 경우 퇴직소득세 정산을 위해 '퇴직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이전 예외 사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9조)

- 만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
-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의 경우 등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상품

▨ 원리금 보장 상품이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0조제2항 제4호 및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호에 의한 운용방법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으로 금융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거나, 체신 관서가 취급하는 예금,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채권 등이 해당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 방법을 제시할 때 원리금 보장상품을 반드시 하나 이상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급보장기관이 파산할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안정적인 금융기관, 체신관서, 정부 등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상품에 한하여 원리금보장상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예금자보호제도를 통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기관의 대상금융상품의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장합니다.

▨ 실적배당형 상품이란?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고 투자 위험에 따라 기대수익이 달라지는 상품으로,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며 예금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퇴직연금 실적배당상품은 집합투자 형태로만 투자되고 있으며, 주식/채권의 직접투자는 불가능합니다.

1. 원리금보장상품과 실적배당형 상품 비교

원리금보장상품과 실적배당상품 비교

원리금보장상품	실적배당상품
사전에 원금과 일정한 이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수익의 변동성이 적으며 비교적 수익이 낮은 편입니다.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이나 손실이 결정되는 상품이 실적배당형상품이며, 일정 수준의 투자 위험이 동반됩니다.
투자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원금과 이자를 보장받고 싶다면 원리금보장상품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저금리 시대에 보다 높은 투자수익을 달성하시고자 한다면 실적배당형상품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상품은 퇴직연금 정기예금입니다.	대표적인 상품은 각종 퇴직연금펀드입니다.

▨ 집합투자증권과 실적배당형보험 등 펀드의 대표적 특징

펀드의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집단성, 간접성, 투자자 평등 및 실적배당의 원칙이 있는데,

펀드의 특징

항 목	특 징
집단성	• 기금의 형태로 투자할 수 있어 적은 돈으로 투자 가능 투자자금이 적으면 여러 가지 투자 대상에 나누어 투자할 수 없음. 그러나 펀드는 소액을 모아 큰 자금으로 만들어 투자함으로 투자 수단도 더 다양해지고 위험도 줄어들게 됨. 즉, 값비싼 우량주나 거래단위가 큰 채권 등에도 쉽게 투자할 수 있으며 충분한 분산투자도 가능
간접성	• 투자와 운용의 주체가 분리되어 있음

	개인 투자자가 개별 종목을 리서치하고 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여러 상품에 적절한 시간에 투자하고, 위험한 종목에 대한 위험관리 작업을 모두 잘 하기는 어려움. 펀드는 적은 비용으로 투자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를 고용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투자자 평등	• 개개인의 투자자들이 수익 등에 있어 투자한 만큼의 권리를 가짐 투자 금액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수익배분에서 투자 지분에 따른 권리를 가짐
실적배당	• 투자자는 펀드의 운용 실적대로 투자 지분에 따라 수익을 배분받음 원리금보장상품과 달리 편입 자산의 가격변동 또는 발행주체의 파산에 따른 수익 및 원금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됨.

실적배당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상품이며, 운용 결과에 따라 투자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되므로 실적배당상품에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투자 설명서를 읽어 보아야 하며, 환율 변동에 따라 외화자산의 투자가치가 변동되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과거의 운용 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사전지정운용제도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본인의 퇴직연금운용상품 만기 후 별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적립금이 사전에 지정한 운용 방법으로 운용되는 제도로, 퇴직연금 가입자의 적립금이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1. 사전지정운용방법 의무적 선정

- 사용자 : 퇴직연금사업자인 근로복지공단이 제시한 디폴트옵션 상품을 규약에 반영해야 합니다.
- 가입자 : 규약에 반영된 상품 중 1개를 선정해야 하는데, 디폴트옵션 상품은 가입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변경 가능합니다.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정하지 않으면 원리금보장상품 만기 시 '동일상품 자동 재예치'가 금지되어 대기성 자금으로 유입되므로, 이자수익이 대폭 감소하게 됩니다.

2.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상품)의 자동 운용

본인의 퇴직연금운용상품 만기 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자동 운용되는데, 운용상품 만기일로부터 4주가 지날 때까지 별도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은 디폴트옵션상품으로 운용됨을 안내하고, 안내 후 2주 이내 별도 지시가 없으면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자동 운용됩니다.

